

춘천지방법원 2020. 10. 7 선고 2019나5078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2020. 10. 7 선고 2019나50783 판결

춘천지방법원 2019. 1. 31 선고 2018가단3093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 종결 2020. 8. 19.

판결 선고 2020. 10. 7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가단3093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9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6. 25.부터 이 사건

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
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
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[원고는 당심에서 을 제1호증(확약서)에 서명하지
않았다고 주장하나, 그 주장은 제1심 판결의 내용으로 충분히 배척된다]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
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장두봉

판사류하나

판사박채은